

# 월간 주요 이슈

소비자를 위한 신문(2022. 12. 2.)

##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조사대상 45% '친환경·무독성' 등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소비자를 위한 신문 ☒ | 입력 : 2022/12/02 [10:39]

환경친화적인 소재라는 인식 때문에 목재로 만든 완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상당수 제품이 표시사항을 빠뜨리거나 '친환경·무독성' 등 표현을 남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구는 어린이가 직접 만지면서 사용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 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 어린이용 목재완구 종류 ]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 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빠뜨렸으며, 이 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 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20개 중 9개(45.0%)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다.

그린워싱은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불리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참고] 대표적인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

<p>(온라인광고) 친환경/ 무독성/ 천연 (제품표시) 친환경</p>	<p>(온라인광고)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인체에 무해 / 환경과 아이를 함께 보호</p>
	<p>순수히 나무가 탄 현상이므로 인체에는 무해한 무독성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p> <p>원목재질 자연 친화적 소재</p>
<p>(온라인광고) Non-Toxic (제품표시) Non-Toxic/ 무독성</p>	<p>(온라인광고) 인체에 무해/ 무독성/ 자연친화적</p>
<p>해당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여 아이들에게 무해하다는 KC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p> <p>퍼즐 테두리에 검은 물질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무해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p>루키토이 제품은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 무독성 판정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p> <p>루키토이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무독성 판정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p>	<p>친환경소재와 스마트토이의 만남</p> <p>세계 최초로 친환경 나무소재에 작동완구의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p>
<p>(온라인광고) 아이들에게 무해/인체에 무해/ 무독성 (제품표시) 무독성</p>	<p>(온라인광고) 친환경</p>